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625호 2018. 1. 3.(수)

선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8-1호 도로명주소 고시 ····· 3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7-1404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64,3-16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열람공고 ····· 5
거창군 공고 제2018-3호 2018년 청년창업농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 11
거창군 공고 제2018-4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49
거창군 공고 제2018-8호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중로3-40호선) ····· 40
거창군 공고 제2018-9호 거창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행정예고 ····· 42

회 람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 고시 제2018 - 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 3.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부여: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3길 61-5 등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과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67-5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19	20090702	2017-01-03	행정구역명(수동면+남상면) 활용	
2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완대리 1059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빼재로 1093-15	20091228	2017-01-03	고제면에 위치한 빼재라는 지명을 반영한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147-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송계로 1767-8	20091228	2017-01-03	송계사를 지나 고제면으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372-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주곡로 98-53	20091228	2017-01-03	주상면의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500-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화1길 38	20090401	2017-01-03	칡의 꽃이 핀다고 하여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450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신기길 66-26	20090401	2017-01-03	마을 가운데 샘물 맛이 좋아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43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원천1길 142-99	20090401	2017-01-03	대사헌 증직을 받은 죽산인 전팔고의 호 원천을 따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여된 첫번째 도로	
8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491-6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월포2길 31	20090401	2017-01-03	수월천 소에 달이 비치므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9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495-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87-3	20090401	2017-01-03	장군봉이라는 지명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171-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촌1길 37	20090401	2017-01-03	가지리 4개 마을중 가운데 자리한다고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09-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3길 61-5	20160420	2017-01-03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1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09-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3길 61-7	20160420	2017-01-03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거창군 공고 제2017 - 1404호

거 창 군 계 획 시 설(교통시설 : 소로3 - 164, 3-165호선) 사 업 실 시 계 획 (변경) 인 가 를 위 한 열 람 공 고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64,3-165호선)의 사업(변경)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 12. 29.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구분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 적 (㎡)			
당초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3-164호선)	거창	동변	소로	3	164	228	6.0	1,728	거창읍 동변리 514-2번지	거고25호 ('02.6.10)	2015.09~ 2017.12.31
		도시계획도로 (소로3-165호선)				3	165	165	6.0	1,266	거창읍 동변리 1160-4번지		
변경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3-164호선)	거창	동변	소로	3	164	217	6.0	1,681	거창읍 동변리 514-2번지	거고25호 ('02.6.10)	2015.09~ 2018.01.31
		도시계획도로 (소로3-165호선)				3	165	165	6.0	1,266	거창읍 동변리 1160-4번지		

2. **사업 시행자** :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3. **사업 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따로붙임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열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50132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이나 전화(055-940-3595), FAX(055-940-3579), E-mail(chanu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 성 명 :
- ○ 연락처 :
- ○ 기타 참고사항. "끝".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소로3-164호선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8,424	1,728					당초
				9,750	1,642					변경
1	거창읍 동변리	514-2	도	53	24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표 재 준			
2	"	1164-2	도	6588	210		국(건설부)			
3	"	514-4	대	55	55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표 재 준			
4	"	514-3	도	56	56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표 재 준			
5	"	512-6	대	56	56		거 창 군			
6	"	511-1	도	131	131		"			
7	"	512-5	대	16	16		"			
8	"	511-2	대	74	74		"			
9	"	211-2	대	36	36	거창읍 동변리 211	유 현 순			당초
	"	211-2	대	36	36		거 창 군			변경
10	"	205-1	대	24	24		거 창 군			
11	"	211-1	도	72	61		"			
12	"	210-1	대	27	27		"			
13	"	209-1	대	71	71		"			
14	"	213-1	도	27	21		"			
15	"	213-2	대	24	24		"			
16	"	215-3	대	331	125	거창읍 동변리 216	신창표씨모제영상공파종종			당초
	"	215-3	대	331	25	거창읍 동변리 216	신창표씨모제영상공파종종			변경
17	"	215-8	대	153	153	거창읍 동변리 216	신창표씨모제영상공파종종			당초
	"	215-8	대	153	32	거창읍 동변리 216	신창표씨모제영상공파종종			변경
18	"	216-1	대	5	5	거창읍 동변리 216	신창표씨모제영상공파종종			당초
										제외
19	"	215-7	대	44	44	거창읍 동변리 216	신창표씨모제영상공파종종			당초
	"	215-7	대	44	17	거창읍 동변리 216	신창표씨모제영상공파종종			변경
20	"	215-9	대	204	204	거창읍 동변리 216	신창표씨모제영상공파종종			추가
21	"	227-2	대	250	235		거 창 군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22	〃	227-3	대	33	33		표 병 수			추가
23	〃	227-1	도	126	86		거 창 군			
24	〃	226-2	도	34	23		〃			
25	〃	226-3	전	171	171		〃			당초
	〃	226-3	전	140	140		〃			변경

○ 소로 3-165호선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29,734	1,266					
1	거창읍 동변리	1160-30	구	21,746	30		국(건설부)			
2	〃	1164-2	도	6588	431		국(건설부)			
3	〃	187-3	도	30	19		거 창 군			
4	〃	241-3	창	33	33		〃			
5	〃	188-1	도	29	29		〃			
6	〃	240-2	답	34	34		〃			
7	〃	188-2	답	18	18		〃			
8	〃	240-1	도	10	10		〃			
9	〃	239-1	대	12	12		〃			
10	〃	189-3	답	20	20		〃			
11	〃	190-2	답	1	1		〃			
12	〃	190-1	도	69	19		〃			
13	〃	191-1	도	37	19		〃			
14	〃	235-2	대	28	28		〃			
15	〃	235-1	도	5	5		〃			
16	〃	234-6	전	25	25		〃			
17	〃	234-4	도	6	6		〃			
18	〃	192-2	대	30	30		〃			
19	〃	234-5	전	89	89		〃			
20	〃	192-1	도	10	10		〃			
21	〃	234-3	도	5	5		〃			
22	〃	233-1	도	3	3		〃			
23	〃	233-2	대	16	16		〃			
24	〃	193-6	대	6	6		〃			
25	〃	193-4	도	7	7		〃			
26	〃	193-5	대	54	4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167,105동1101호	표 영 길			
27	〃	231-4	대	19	19		거 창 군			
28	〃	193-3	도	68	6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167,105동1101호	표 영 길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29	거창읍 동변리	231-3	도	9	9		거 창 군			
30	〃	194-2	대	46	46		〃			
31	〃	194-1	도	19	19		〃			
32	〃	195-3	대	61	61		〃			
33	〃	195-2	도	20	20		〃			
34	〃	227-2	대	250	15		〃			
35	〃	227-1	도	126	23		〃			
36	〃	226-2	도	34	5		〃			
37	〃	226-3	전	171	31		〃			

거창군 공고 제 2018-3호

2018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 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의거 2018년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및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14명(추천인원수: 배정인원 수의 1.5배에 해당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　　령 :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18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8.1.1～2000.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가.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직계존속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18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5.01.0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따라서 2014.12.31. 이전 등록자도 상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다.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 주 지 : 사업 신청을 하는 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군,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

원금 신청일(별지 2호 서식)전일까지는 해당 군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함.

3. 지원목적 :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4. 신청기간 : 2018. 01. 01.(월) ~ 2018. 01. 30.(화) / 30일간

5. 신청서 접수방법 :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이 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작성하여 제출

6.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7. 지원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대상자 단독세대 포함)는 해당 세대의 건보료가 농업인 건보료 정액지원 수준* 이상이면 지원제외

  * 부과점수 1,801점(건보료 323천원) 이상

- 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 하는 경우는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외 수준* 이상이면 지원제외

  * 부과점수 2,501점(건보료 449천원) 이상

  ※ 위 경우는 직계존속 세대와 본인세대 모두에 적용하여,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제외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액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산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연도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8. 지원인원 :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단,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경우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Team 창업)한 경우는 각각 해당 금액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를 등록한 법인이여야 하며, 정착지원금은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법인카드 발급 불가)

9. 지원기간 : 독립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18년도 사업 대상자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구 분	지원 1년차 (2018.4 ~ 2019.3)	지원 2년차 (2019.4 ~ 2020.3)	지원 3년차 (2020.4 ~ 2021.3)	합 계
독립경영 1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80(12)	3,240(36)
독립경영 2년차	90만원(12개월)	80(12)	-	2,040(24)
독립경영 3년차	80만원(12개월)	-	-	960(12)

※ 단, 위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 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18년도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독립 경영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부터 지급하되, 독립경영 1년차에 준하여 지급

* (1개월～12개월) 100만원, (13개월～24개월) 90만원, (25개월~36개월) 80만원

- '18년도 등록 예정자는 '18년 12월말까지는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주 등록을 하여야 정착지원금 지급 가능

- 선발 시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상기 지급례에 따라 지급

- 지급 2-3년차는 매년 첫 영농정착지원금 신청(별지 2호서식) 시 본인과 직계존속의 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부과 고지서)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그 부과액이 정착지원금 지원 제외[3-1-3)]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 중단

10.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 자금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유흥업소 등 통상 국고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는 카드승인 제한(별표 4)

○ 지급 방법: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직불카드로만 결제가능

-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직불카드를 신청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11.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 및 제재 조치

○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시·군·구(특광역시)는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부터 의무가 부여, 단 의무교육(필수과정만 해당)은 선발시점부터 이행의무 발생

○ 단, 독립경영 예정자는 사업 시행연도 12월말까지 독립경영을 미이행할 경우 사업 대상자(청년창업농) 선정을 취소

의무사항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의무 교육 이수 (160시간)	필수 과정 (40)	농정제도, 윤리경영 등 농업인 책무, 경영·회계기초	해당 강좌 미이수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선택 과정 (120)	생산기술, 경영심화 등 과목은 자율 선택	의무교육 시간 부족 시 차기 연도 지원금 지급 중단
재해보험, 자조금 가입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된 품목과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 품목 적용	당해 연도 미가입시 차기 연도 지원금 지급 정지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농정원 개발 경영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미기록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인 영농계획 변경(영농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 중단
전업적 영농유지		상근고용,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성실 신고	신청 서류	영농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등	지원금 전액 환수
	이행 점검	영농이행실적 보고, 경영장부, 재해보험가입 증명서 등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의무영농 기간준수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 의무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가. 의무교육 과정 이수

<의무사항>

○ 사업 대상자는 정착지원금 수령기간 동안 별표 1의 의무교육 과정에 대해 해당 시간을 이수해야 함.

- 의무교육은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분하되, 필수과정은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선택과정은 농업인이 원하는 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독립경영 예정자도 필수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선택과정은 자금 수령기간만큼 월 단위로 환산하여 이수(월 16시간)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독립경영 준비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도 실적으로 인정

- 모든 교육과정은 농정원 '농업인력 포털'에서 이수 확인이 가능(이수증 출력)해야 하므로 해당 교육이 농업인력 포털 등록(예정) 과정인지 확인 필요

- 필수과정은 평가를 거쳐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야 이수로 인정, 미이수 시 재수강 필요

- 필수과정은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교육을 받지 못 하였을 때는 타 지역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음

<제재 조치>

○ 연간 의무교육 미이수 시 다음 연도 정착지원금 지급 중단

○ 필수 과정은 미이수 시 정착지원금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연도 필수과정 이수 시 지급 재개

- 단, 필수과정을 수강하였으나 기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은 지원금은 지급하되, 다음 연도에 해당 과목을 재이수 해야 함

- 필수과정을 수강하지 못 한 사람 중에서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 한 것을 소명하면 정착지원금 지급

* 차기 연도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미 이수 시에는 지급 중단

나. 재해보험,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 의무

<의무사항>

○ 사업 대상자는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가입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가입

- 단, 해당 재해보험 상품에서 정하는 면적 및 사육두수 등 영농 규모 하한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이 조성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자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

- 단, 해당 자조금 품목에서 면적 및 사육두수 등 영농 규모 하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영농규모인 경우에만 적용

<제재 조치>

○ 연말까지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및 자조금 미가입 시 차기연도 정착지원금 지급 정지

- 차기연도에 가입할 경우 지급기간 범위내에서 차차기연도는 지급 재개

* 예시) ① 독립경영 1년차 미가입 → 2년차는 지급 정지, 2년차 가입시 → 3년차는 지급 재개, ② 독립경영 2년차에 선발되었으나 당해 연도 미가입시 지급 3년차는 지급 중단

다.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의무사항>

○ 사업 대상자는 농정원에서 개발하여 운영 중인 경영장부 기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야 함

- 사업 대상자는 농정원에서 시행하는 경영장부 사용자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동 교육과정은 의무교육(필수교육)으로 인정

- 사업 대상자는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 작성 여부를 지자체 담당자가 농업경영장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익월 25일까지 전월 기록을 확정하여 제출(방문 제출 불필요)

○ 사업 대상자는 신청 시 제출하였던 영농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여건 변화로 영농계획 대로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가능

- 다만, 사업신청서(별지1호 서식)의 동일 영농유형에 해당하는 품목변경 등 사소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에게 신고로 대체

<제재 조치>

○ 경영장부 미기록(미제출) 시 다음 달부터 정착지원금 일시 지급 정지

- 단, 지급 정지 후 경영장부 재작성 시 지급 재개는 가능하나 일시 정지 3회 이상이면 지급 중단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 없이 영농계획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는 정착지원금 지급 중단

라. 의무 영농기간 준수

<의무사항>

○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과 지급 완료 후 지급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하여야 함

- 단, 다른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의무 영농기간이 부여 된 경우에는 동 사업에 따른 의무영농 기간은 기존 의무 영농기간에 추가

* 예) 한농대 졸업생이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간 지급받은 경우 총 12년 의무영농(한농대 졸업에 따른 의무영농 6년 + 산업기능요원 복무에 따른 추가 3년 + 영농정착 지원금 수령에 따른 추가 3년)

<제재 조치>

○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을 환수(월할로 계산)

<지원금 환수 금액 예시>

※ 영농정착 지원금을 월 100만원씩 30개월 수령 후 5개월간 영농 종사를 하다가 영농 포기

▶ ① 30개월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령 후 의무 영농기간은 30개월 부여

② 100% - [(35개월 ÷ 60개월) × 100] = 42%

③ 3,000만원의 42%인 1,260만원을 환수

- 다만, 사업대상자가 신병·기상재해 등으로 불가피 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환수 유예 또는 중지할 수 있음

<환수 유예 또는 중지 예>

▶ (환수 유예) : 1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 기상재해로 인하여 당해 연도 영농이 불가능 한 경우 등

▶ (환수 중지) : 질병·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영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재해로 영농기반이 일실된 경우 등

마. 전업적 영농 유지

<의무사항>

○ 사업대상자는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영농 종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병행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 수령하는 행위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이하의 단기 근로는 가능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다.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 이탈하는 행위

라.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 단,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단기 주간 과정(월 60시간 미만)과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가능

<제재 조치>

○ 전업적 영농유지 의무 위반 시에는 지원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은 위반 행위가 이뤄진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까지 기간에 지급된 금액을 환수(월할로 계산, 시작 월 포함)

- 시·군·구(광역시장)로부터 정착지원금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시·군·구가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의 대출

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 다만, 신병·기상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업적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정착지원금을 일시 정지하고,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바. 성실 신고

<의무사항>

○ 사업대상자 선발을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및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기간 중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제재 조치>

○ 선발 시 제출한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 영농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정착지원금을 환수

○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중에 제출하는 경영장부, 분기별 영농이행 보고 자료 및 자금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거짓 작성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까지 기간에 지급된 금액을 환수(월할로 계산, 시작 월 포함)

- 시·군·구(광역시장)로부터 정착지원원금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시·군·구가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별표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의무교육 과정

<table>
<tr><th>구분</th><th>주관</th><th>분야</th><th>주요 내용</th><th>추진방식</th></tr>
<tr><td rowspan="4">필수
(40h)</td><td rowspan="3">농식품부
(농정원)
(2박3일
당일/
25h)</td><td>농정/
제도
(2h)</td><td>농업·농촌의 미래가치와 농정 방향, 6차산업·식품안전 등 농정 주요이슈 정보 공유,</td><td rowspan="3">*권역별로 운영하되, 타 지자체 교육 참여가능
*선정년도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차년도 이수 가능
(단, 연차별 의무교육시간은 필수이수해야함)</td></tr>
<tr><td>마인드
(7h)</td><td>청년창업농의 정책적 중요성과 책무, 윤리경영인, 지역리더로서 리더십 등</td></tr>
<tr><td>경영
기초
(16h)</td><td>경영전략의 이해, 투자 및 위험관리, 마케팅 전략, 농작업안전관리, 농식품 분야 기본법률 및 노무·법무·세무지식 등</td></tr>
<tr><td rowspan="2">지자체
(1박2일,
15h)</td><td>지방농정/
제도
(2h)</td><td>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력육성 방향 및 지원제도, 주요사업 소개 등</td><td rowspan="2">*권역별로 운영하되, 타 지자체 교육 참여가능
*선정년도 필수이수</td></tr>
<tr><td>회계실무
(13h)</td><td>농업회계의 기본 이해 및 ‘농업경영장부’ 프로그램 활용실습</td></tr>
<tr><td rowspan="4">자율
(120h)</td><td colspan="2">생산</td><td>창업품목 관련 생산기술교육</td><td rowspan="4">*경영 및 정책분야는 농업인력포털에서 추천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나 수강시간의 50%를 20시간 이내에서 인정</td></tr>
<tr><td colspan="2">경영</td><td>유통·마케팅, 홍보, 영농계획 수립, 정보 획득, 6차산업, 사업기반 조성, 경영관리·회계·세무, 기초법률, 고객 이해, 경영리더십 등</td></tr>
<tr><td colspan="2">정책</td><td>농정현안 및 지역정보 공유, 창업농 간 네트워크</td></tr>
<tr><td colspan="2">정착지원</td><td>지역민과 갈등관리, 농촌문화 이해하기, 부모와 갈등관리(승계) 등</td></tr>
</table>

* 연간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자율교육 이수 시간은 지급 기간만큼만 이수하면 인정[정착지원금 6개월 수령 = 필수교육 40시간 + 자율교육 72시간(6개월×12시간)]

[별표 2]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서면평가)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영농비전 (30)	장기 영농 계획 (10)	1.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 되었는가?	10 □	8 □	6 □	3 □	1 □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에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영농 방법 (10)	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10 □	8 □	6 □	3 □	1 □
		평가방법 : 영농계획에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방법이 향후 발전 가능성(스마트 팜, 6차산업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수지 전망 (10)	3. 중장기 영농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	10 □	8 □	6 □	3 □	1 □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 포함된 수지전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구체성 (25)	품목 선정 (5)	4. 영농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5 □	4 □	3 □	2 □	1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영농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생산 계획 (10)	5.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10 □	8 □	6 □	3 □	1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10)	6.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	8 □	6 □	3 □	1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실현 가능성 (25)	자금 마련 계획 (10)	7. 향후 영농 창업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10 □	8 □	6 □	3 □	1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교육 훈련 계획 (10)	8.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당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	8 □	6 □	3 □	1 □
		평가방법 :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이 영농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신용 상태 (5)	9. 사업 신청자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5) □		보통(3) □		불량(1) □
		평가방법 : 정책자금 등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자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등을 기반으로 신용능력을 확인하여 점수부여					

<table>
<tr><th>평가
지표</th><th>평가
항목</th><th>평가내용</th><th>평가척도</th></tr>
<tr><td rowspan="6">개인
역량
(20)</td><td rowspan="3">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
(10)</td><td>10-1.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td><td>농업계 (10) □ 비농업계 (0) □</td></tr>
<tr><td colspan="2">평가방법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
(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앨범,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료)</td></tr>
<tr><td>10-2.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td><td>100시간 이상 (10) □ 70~99 (8) □ 40~69 (6) □ 20~39 (3) □ 15~19 (1) □</td></tr>
<tr><td colspan="2">평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td></tr>
<tr><td rowspan="3">자격증
보유
수준
(10)</td><td>11.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td><td>상 (5) □ 중 (3) □ 하 (1) □</td></tr>
<tr><td colspan="2">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5점) :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중(3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td></tr>
<tr><td>12. 농업 이외에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td><td>상 (5) □ 중 (3) □ 하 (1) □</td></tr>
<tr><td colspan="3">평가방법 : 상품 디자인 및 웹 디자인, 마케팅, 컴퓨터 프로그램밍, 기계·설비 등 영농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3개 이상), 중(2개), 하(1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만 인정</td></tr>
<tr><td>가점</td><td colspan="3"><신규 영농 예정자 가점 항목: 5점>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자(농식품부 장관급 이상 3점, 광역단체장 2점, 기초단체장 1점: 중복 수상 시 가점이 높은 하나만 인정)
- 농산업분야 실무경험(인턴십, 농업법인 근무)이 있는자(2점)

<기존 농업인 가점 항목:5점>
• 수상실적(2점)
- 중앙정부(1점), 지방자치단체(0.5), 농업인단체(0.2)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단, 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상실적을 합산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최대 2점까지만 인정)
• 경영장부 기록(2점)
- 1년 이상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고 있는자
• 정책참여도(1점)
- 재해보험가입, 농업인안전보험가입, 농식품부 지원 자조금단체 가입, 들녘경영체, 작목반 또는 공선출하회 참여, 품목별 연구회(농진청 주관) 참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통 가점 항목: 10점>
- 농업법인 공동경영 또는 가족(부부) 공동경영(5점), 지자체 집중육성 품목 해당(5점)</td></tr>
</table>

[별표 3]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면접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문항
1. 농업에 대한 자세 (40)	1.1. 농업관	1.1.1 농업에 대한 자세는 적절한가?(15)
	1.2. 목표의식	1.2.1. 영농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15)
	1.3. 영농 추진 의지 및 열정	1.3.1. 영농을 결심하게 된 의지와 열정은 어떠한가?(10)
2. 영농정착 가능성 (40)	2.1. 지역사회 참여	2.2.1. 사회적 경제 실천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었는가?(10)
	2.2. 영농창업 목표의 구체성	2.2.1. 영농창업 동기와 영농정착 후 이루고자 하는 영농 목표는 명확한가?(5)
	2.3. 영농창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2.3.1. 영농창업 일정과 소요자금 등 중장기 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15)
	2.4. 성장 가능성	2.4.1. 스마트 팜, 6차산업화 등 농업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계획을 갖추었는가?(10)
3. 창업 역량 (20)	3.1. 역량 개발 계획의 구체성	3.1.1. 영농창업 계획 실현을 위한 영농역량 개발 계획은 적절한가?(10)
	3.2. 청년 창업농으로서 필요한 인성, 친화력, 소통능력	3.2.1. 청년 창업농으로 적합한 인성, 친화력, 소통능력이 있는가?(10)

※ 각 평가항목별로 5단계 나눠서 평가(각 단계별로 만점 점수의 20%씩 차감하여 부여)
15점 항목(15-12-9-6-3), 10점 항목(10-8-6-4-2), 5점 항목(5-4-3-2-1)

[별표 4]

영농정착지원금 직불카드 승인 제한 업종

업 종	업종코드
총포류판매점	2003
골프경기장	2101
골프연습장	2102
카지노	2103
당구장	2121
노래방	2199
기타레져업소	2199
귀금속	4411
성인용품점	4481
안마시술소	7121
기타대인서비스	7199
칵테일바	8010
유흥주점	8101
단란주점	8201
외국인전용가맹점	9993
기타 전문점	9998

[별지 제1호 서식]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소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영농교육실적	시간		
	농업계 학교 졸업	□ 여 □ 부				
	병역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협업경영	□ 부부 공동경영 (□ 여, □ 부) □ 법인 공동창업 (□ 여, □ 부)				
	영농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전체, □ 일부) □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목표하는 영농 유형					
지원사업	영농정착지원금	□ 신청 □ 미신청				
	농지은행 농지지원	□ 매입(논 ㎡, 밭 ㎡, 과수원 ㎡) □ 임차(논 ㎡, 밭 ㎡, 과수원 ㎡)				
	후계농육성자금	□ 신청 □ 미신청 / 신청 시 대출희망액 천만원				
	선도농가실습지원	□ 신청 □ 미신청				
	농업법인 인턴제	□ 신청 □ 미신청 / 신청 시 진로(□ 법인창업 □ 개인창업)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년창업농)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2.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농업계학교 졸업 여부, 협업경영 정보, 병역사항, 영농기반 마련사항, 영농계획서의 기재한 사항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 위탁·제3자 제공 동의	청년창업농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제공받는 자 : 사업 대상자 거주의 시·도,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농협카드, 창업형 후계농에게 농림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2. 이용 목적 ◦ 창업형 후계농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의 바우처 포인트 생성과 중복수혜, 부정수급, 정산에 관한 업무 ◦ 창업형 후계농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농지·자금·교육 및 컨설팅 등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사업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DB, 농업인력포털, 경영장부와의 정보 연계 업무 ◦ 창업형 후계농 사업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3.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영농기반 마련사항, 영농계획서의 기재한 사항 4.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상기와 같이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3.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4. 사업자 등록증
5.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6.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7.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8.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9.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0.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11.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2.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3.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작성 설명 자료>

①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경력이 3년 이하 이면서(해당 연도 영농 예정자를 포함)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하고 본인 명의로 영농에 종사

* 영농경력은 농업 경영체 경영주로 신규 등록한 날부터 계산

② 영농교육 실적: 최근 3년 이내의 영농교육 중 교육이수증명서(확인서) 등 실적 증명이 가능한 교육을 말하며, 온라인 교육은 교육시간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기재(온라인 10시간 → 5시간)

③ 목표하는 영농 유형: 식량작물, 채소(시설, 노지), 과수, 화훼, 특용작물, 축산, 복합(축산, 경종) 중 선택하여 기재

④ 농지은행 농지지원: 농지은행 보유농지의 장기임차(5~10년) 및 매입(지원상한 45~35천원/3.3㎡, 연리 1%, 최장 30년 균분상환) 지원

⑤ 후계농육성자금: 신청연도 현재 50세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인(예정자 포함) 자에게 농지구입, 시설설치 등 창농기반 조성 비용대출(최대 3억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⑥ 영농정착지원금: 청년 농업인(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에게 영농 초기 정착지원금을 지급(매월 최대 100만원)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 및 성장 지원

⑦ 선도농가실습지원: 선도농업인을 통해 청년농에게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실습교육 지원(선도농가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7개월, 연수생 : 교육훈련비 지원(월 80만원 한도, 3~7개월)

- **독립경영 예정자만 신청가능**,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독립경영 개시한 경우는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교육훈련비는 중단)

⑧ 농업법인 인턴제: 농업법인에서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18~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최대 100만원, 월 보수의 50%이내, 연간 600만원(6개월)까지)

- **독립경영 예정자만 신청가능**,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독립경영 개시한 경우는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인건비 지원 지급 중단)

5개년 영농(창농) 계획서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소유, 임차 등) 현황 및 향후 영농계획을 작성(부모 명의의 기반은 작성 제외), 본인 명의의 기반이 없는 경우는 현재 란은 공란, 향후 계획만 작성

1. 일반현황

1-1. 영농 유형

구분	현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주품목						
부품목						

1-2. 농업경영 구성원(본인 제외)

구분		현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가족 공동대표		명 명					
고용	상시	명					
	임시	명					
	일용	월 0명					

2. 농지 규모(단위: ㎡)

구분		현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합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논	소유							
	임차							
밭	소유							
	임차							
과수원	소유							
	임차							
목초지	소유							
	임차							
합계	소유							
	임차							

2-1. 가축 사육규모

※ 가축은 수시로 출하가 이루어지므로 후계농 선정 이후는 최초 입식 규모만 표기

□ 소

구분		현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평균 납유량(ℓ/일)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 계					
육 우						
젖 소						

□ 돼지

구분	현 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상시모돈두수	연간출하두수	상시모돈두수	연간출하두수
양 돈 (일관/비육 선택)				
종 돈				

□ 가금

구분	현 재(사육마리수)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종 계		
산란계		
육용계		
종오리		
육용오리		

□ 기타가축

구분	현 재(사육마리수)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염소		
00		

3. 농지 및 축사 소재지

1) 소유

연번	현 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매입 희망지		
	주소	지목	작목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 지번까지 기재*			*리·동까지 기재*		
2						
3						

2) 임차

연번	현 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임차 희망지		
	주소	지목	작목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 지번까지 기재*			*리·동까지 기재*		
2						
3						

4. 농작물 재배시설 및 가축 사육시설(단위: ㎡)

구분		현 재	후계농 선정 이후					합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유리 온실	소유							
	임차							
비닐 온실	소유							
	임차							
축사	소유							
	임차							
가공 시설	소유							
	임차							
000	소유							
	임차							

5. 농기자재(보유 및 확보계획)

구분	현 재	후계농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트랙터						
콤바인						
000						

6. 자금조달 계획

구분	자부담	정책자금 융자	합 계
농지			
시설			
농기계장비			
농자재			
00			

7. 농업경영 역량

1)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

학교명/학부 또는 학과명	재학기간	경종·축산 관련 전공교육 과정명	이수 학점 또는 교육 시간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제출

2) 사회 교육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 수료증 사본 제출

3) 농업법인 재직 경력

법인명	재직기간	직무내용	직무내용이 희망 하는 농업경영 활용 가능성

* 재직증명서 등 제출

4) 농업 생산, 가공, 유통 관련 자격증 및 인증 내용

자격증 명 또는 인증종류	인증번호	발행기관

5) 경영관리 현황

* 독립경영 예정자는 작성 제외

순번	확인요소	응답
1	연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	최근 1년간 경영장부(회계장부)를 작성하였는가?	□ 예 □ 아니오
3	전산으로 경영장부(회계장부) 관리를 하는가?	□ 예 □ 아니오 S/W명 : (사용하는 프로그램 명 기재)
4	주기적으로 영농일정표를 작성하는가?	□ 예 □ 아니오
5	최근년도 작성한 생산일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6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최근년도 경영계획서 및 경영장부, 생산일지 등 관련자료 사본 제출

8. 판매·마케팅 계획

판매처	현재 판매비중(%)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공판장		
온라인		
농협공동출하		
0000		
합 계		

* 생산물 판매・마케팅 전략과 계획이 있는 경우 첨부

9. 홍보계획

홍보수단(방법)	현 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SNS 활용		
전시회 참여		
방송매체 활용		
0000		
합 계		

10. 교육훈련 계획

※ 농업인력포털(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영역		1 년차	2년차	3년차
환경제어	교육 내용	작물 생육특성 이해, 최적의 생육 환경, 최적 환경 구성	환경제어 관련 시설 및 양액제조방법	시설재배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방안
	이행 방안	농업기술센터 교육	농업기술센터, WPL	WPL 교육

<참고: 영농 및 경영 활동>

영역	
재배/사육	생육특성 이해, 품종이해, 육묘 관리, 양수분 관리, 병해충 방제, 과수원 조성, 정지 및 전정, 장해관리, 결실관리, 수확관리, 수확후 관리, 농기계관리, 농자재 특성 및 활용, 시설 설치, 환경제어, 양액조제 및 활용, 번식관리, 사양관리, 영양관리, 질병위생관리, 분뇨 처리 등
경영	사업환경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회계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 인사채용, 직무관리, 조직관리, 구매관리, 커뮤니케이션, 가공 상품개발, 농촌체험 상품 개발, 농산물 가공, 스마트팜 등

11. 영농 동기 및 경영계획(3페이지 이내)

※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는 아래 서식 이외에 해당 파일을 추가로 제출(평가 시 우대)

<영농 동기> 영농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롭게 작성
<현재 상황> - 독립경영예정자의 경우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독립경영 준비활동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 독립경영자는 영농기반, 농산물 생산량, 판매처, 현재 매출 등 수지현황과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경영계획> 연차별(5개년 계획)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자금 조달계획, 생산기술, 영농기반 구축 방안, 경영 다각화 방향, 생산기술·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이수 목표, 판로 및 마케팅 전략 등 영농 창업 및 성장 목표를 자유롭게 기술

[별지 제2호 서식]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신청서(0 분기)

1. 인적사항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주 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033) - 휴대폰 :

1-1. 법인 정보

법인명		공동 대표자	
소재지 주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 법인 공동 창업자인 경우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

2. 금융정보

농협 계좌	
영농정착지원금 직불카드 번호	

3. 영농정보

작물 · 부분명	소유 형태(소유 또는 임차)	경작면적(㎡) 및 사육두수 등

4. 신청금액

구분	금액(원)	비고
0월		
0월		
0월		

[별지 제3호 서식]

영농계획 이행 보고서(0 분기)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033) - 휴대폰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교육이수실적(이수증 첨부)

교육 일시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시간	교육기관	비고

3 농업 종사내역(간결하게 대표적인 사항 기재)

구분	추진실적	영농 일수 및 시간
0월		
0월		
0월		

4. 기타 추진사항

○

○

○

[별지 제4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용　　도 :

위 사람은　년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에(종사 중, 종사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구청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940-81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1월 01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공고 제2018 - 4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경상남도 거창군이 시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3단계 조성공사에 편입 되는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7년 12월 26일 수용재결하고 토지와 물건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명칭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3단계 조성공사
2. 사업 시행자 : 거창군수
3. 사업장 위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산142-2번지 일원
4. 사 업 내 용 : 매립시설 증설(면적: 17,252㎡ / 용량: 156,890㎥)
5. 공 고 기 간 : 2018. 01. 02 ~ 2018. 01. 16 까지
6. 수용재결기관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7. 송달할 서류 : 재결서 정본
8. 공시송달 대상자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거창군)	지 번	지 목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 류
		공부	현황	공부	편입					
거창읍 양평리	산143	임	임	298	298	미등기		장석윤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토 지 대장상 소유자

2018. 1. 2.

거 창 군 수

거창군 공고 제2018 - 8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3-40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2-127호(2012.12.14)로 고시된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3-40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4.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경없음)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686-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3-40호선)사업

나) 명 칭 : 가북지구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 따른 이설도로공사(군도6호선)

3. 사업규모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비 고
		읍·면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 적 (㎡)	시 점	종 점		
교통시설	가북지구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 따른 이설 도로 공사 (군도6호선)	가북면	박암 몽석	중로	3	40	1,257	12	당초 27,075 변경 30,150	가북면 박암리 686-4	가북면 몽석리 1197-2	거창군 고시 2008-43호 (2008.09.17)	사업기간 및 면적조서 변경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35

나)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5. **사업기간**

❍ 당초 : 2012.12.14 ~ 2017.12.31

❍ 변경 : 2012.12.14 ~ 2018.12.31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및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055-940-5535)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9.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거창군 공고 제 2018 - 9호

거창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행정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변경 작성을 완료하고 고시하기 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8. 1. 3.

거 창 군 수

1.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주요내용
   ○ 명　　칭: 거창군 가축사육제한구역
   ○ 위　　치: 거창군 전역
   ○ 지정면적: 531.3㎢(기존 512.78㎢ 증 18.52㎢)

3. 예고기간 : 2018. 1. 4. ~ 2018. 1. 23.(20일간)

4.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내역

행정명	증감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	주거밀집지역에서 300m이내	주거밀집지역에서 800m이내	
거창읍	기정	10,630,998	12,614,906	4,726,428	14,742,786	42,715,118
	변경	11,849,279	21,696,446	28,411,786	47,480,222	48,586,071
	증감	1,218,281	9,081,540	23,685,358	32,737,436	5,870,953
주상면	기정	-	7,899,339	4,712,533	22,400,591	35,012,463
	변경	-	8,494,635	13,370,460	36,499,296	36,499,296
	증감	-	595,296	8,657,927	14,098,705	1,486,833
웅양면	기정	412,984	10,776,019	6,337,677	25,139,734	42,666,414
	변경	413,237	11,157,907	17,486,797	42,876,000	42,876,000

	증감	253	381,888	11,149,120	17,736,266	209,586
고제면	기정	-	7,808,321	4,734,299	23,054,255	35,596,875
	변경	-	8,384,555	13,511,787	38,338,811	38,338,811
	증감	-	576,234	8,777,488	15,284,556	2,741,936
북상면	기정	36,837,783	7,278,515	4,575,492	29,282,219	77,974,009
	변경	35,875,499	8,950,308	14,197,779	44,116,619	79,037,719
	증감	-962,284	1,671,793	9,622,287	14,834,400	1,063,710
위천면	기정	-	8,554,266	4,267,433	15,972,256	28,793,955
	변경	-	8,273,769	12,337,495	28,091,379	28,091,379
	증감	-	-280,497	8,070,062	12,119,123	-702,576
마리면	기정	1,279,932	9,440,545	5,120,787	17,891,536	33,732,799
	변경	1,261,367	9,234,349	14,433,658	32,719,407	33,586,317
	증감	-18,565	-206,196	9,312,871	14,827,871	-146,482
남상면	기정	705,866	11,461,955	7,073,859	28,266,281	47,507,961
	변경	780,041	11,652,917	18,884,425	47,582,384	47,582,384
	증감	74,175	190,962	11,810,566	19,316,103	74,423
남하면	기정	10,156	5,740,518	3,470,516	20,887,720	30,108,910
	변경	9,774	5,979,226	9,555,150	30,594,388	30,602,759
	증감	-382	238,708	6,084,634	9,706,668	493,849
신원면	기정	-	10,086,612	6,277,003	29,921,357	46,284,972
	변경	-	10,250,267	16,784,627	48,734,908	48,734,908
	증감	-	163,655	10,507,624	18,813,551	2,449,936
가조면	기정	2,739,940	11,472,837	5,429,694	17,683,798	37,326,269
	변경	2,635,370	13,529,910	19,613,925	38,832,168	39,021,209
	증감	-104,570	2,057,073	14,184,231	21,148,370	1,694,940
가북면	기정	2,182,148	9,923,492	6,566,892	36,393,621	55,066,153
	변경	2,183,798	10,562,355	17,478,579	56,721,330	58,355,614
	증감	1,650	638,863	10,911,687	20,327,709	3,289,461
총합계	기정	54,904,016	113,057,325	63,292,612	281,636,156	512,785,899
	변경	55,008,364	128,166,644	196,066,467	492,586,913	531,312,469
	증감	104,348	15,109,319	132,773,855	210,950,757	18,526,570

5. 지형도면 열람장소: 거창군청 환경과

6. 의견제출: 상기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내 거창군 환경과(☎ 940-35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고시 총괄도